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58호 2022. 9. 2(금)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 1
-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
-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776호 도로지정공고-----9
- 남원시 공고 제2022-1781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10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

- 총 2건 (규칙 2) -

□ 규칙 : 2건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716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가.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	문화 예술과
717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위탁계약 선정 및 체결,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업무 감독 및 위탁기관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접종신청 및 방법(안 제8조) 마. 예방접종비용 청구 및 지급(안 제9조~제10조) 바. 준용 규정(안 11조)	보건 지원과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9월 2일

남원시 규칙 제 716 호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9월 2일

남원시 규칙 제 717 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원시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 1. 로타바이러스: 3회
- 2. 대상포진: 1회

제3조(위탁계약 선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정된 의료기관을 연 1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접종신청 및 방법)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제2조제1호 접종을 위한 영아일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시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선택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남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제4조제1항 관련)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위탁의료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위탁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참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 남원시청

대표자: 남원시장 000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위탁계약조건 >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④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 ○○호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제4조제1항 관련)

- 1. 의료기관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귀 기관을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 남원시 공고 제 2022 - 1776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2-3 3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901-1(답)	박*랑	2022-건축과- 건축신고-87	39.25	4	157	901-9	157	박*랑

남원시 공고 제2022 - 1781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중복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심사기준 추가
- 우리시의 정주여건 및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상향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항목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심사를 위한 심사 기준 추가 (안 제4조제3항)
- 보조금의 지원 범위 상향 (안 제6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중복사항 삭제(안 제2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08. 26. ~ 2022. 08. 14.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19),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 style="text-align: center;">남원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우리 시 정주여건 및 노후 공동주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항목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추가: 임대주택 추가
- 지원항목 추가: (현행) 15개 세부 항목 규정

→ (변경안)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 공용시설물 전체 부분으로 확대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심사를 위한 심사 기준 추가(안 제4조제3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별표 1 신설

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 상향 (안 제6조)

(현행) 3천만원 → (변경안) 1억원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중복사항 삭제(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 ~ 9. . (20일간)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동주택”으로,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
2. 부대시설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를 따른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점수배점
계		최고 100점
정 량 가 (부 서 평 가) 70점	① 준공 후 경과년수(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25년 이상 공동주택 20 ▪ 준공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 16 ▪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 12 ▪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8 ▪ 준공 후 10년 미만 공동주택 4
	②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15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12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9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6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3
	③ 재난위험등급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 이상 15 ▪ C등급 10 ▪ B등급 이하 5
	④ 단지규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세대 미만 10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8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6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4 ▪ 1,000세대 이상 2
	⑤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지원 10 ▪ 8년 이상 경과 8 ▪ 6년 경과 8년 미만 6 ▪ 4년 경과 6년 미만 4 ▪ 2년 경과 4년 미만 2
정 성 평 가 (심 사 위원) 30점	⑥ 긴급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⑦ 효과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⑧ 필요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 시설 여부 등
<p>※기타 선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순에 따라 지원 2. 동점일 경우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재난안전, 사업의 적정성순으로 선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u>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u>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공동출입문의 보수·교체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보수 2. 옥외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3.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4.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p>제3조(지원대상) ① ----- ----- ----- ----- ----- <u>공동주택</u> ----- ----- ----- ----- <u>대하여</u> ----- ----- ----- <u>서 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동주택 공용부</u> 2. <u>부대시설</u> 3. <u>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u> 4. <u>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u>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구성 등) ① <u>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u></p> <p>1. <u>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2. <u>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u></p>	<p><u>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를 따른다.</u></p> <p>제24조(구성 등) <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무한 사람</u></p> <p>3. 「<u>공동주택관리법</u>」 제67조 제2항에 따른 <u>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u></p> <p>4. <u>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 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u></p> <p>5. <u>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u></p> <p>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⑥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삭 제></p> <p><삭 제></p>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 지원 대상의 확대 및 보조금 지원 범위의 상향
-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안 제4조(지원방법)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2,400백만원 [※ 2023년도 전체 예산]
 - 연간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 24개소
 - ※ 추계 산출 근거: 49개소(총 공동주택 단지) ÷ 2
 -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 1억원 이하
 -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가능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연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도						
총비용	12,200	2,400	2,500	2,400	2,500	2,400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12,200	2,400	2,500	2,400	2,500	2,4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건축과장 양근식